

한미FTA와 고용

허 재 준*

“기축통화국과는 달리 한국은 외환유동성 부족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금융 위기시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비스업 중 거의 유일하게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해운산업의 미국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미국 국적선이 아니면 미국 연안 해운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존스법(Jones Act) 폐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 그런데 존스법 폐지를 미국이 받아들일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줄 알기 때문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지난 해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 각 협상 분과의 주요 협상단원들이 모인 회합에서 오고간 대화의 한 장면이다. 한미FTA 출범 당시 우리 협상단의 협상력에 우려가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4월 2일 공개된 협상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협상단이 선방을 넘어 활약했다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양국이 조인할 조문작업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니 한편으로는 협상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기업과 근로자 대책을 만드는 일은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빠르지 않을 것이다.

고용측면에서 미국과의 FTA는 전반적으로 성장률을 제고하여 전체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수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농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방송·문화·오락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일부는 소득 저하를 경험하거나 고용조정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고용조정된 근로자의 54% 정도는 6개월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나머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부 근로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예 은퇴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55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 취업자의 69%에 달하는 농림축산업부문이나, 피해부문 중 일부 자영업자들은 고용조정보다는 주로 소득감소를 겪게 될 것이다.

한미FTA가 고용조정되는 근로자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회도 만들고 세계는 한국과 미국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한미FTA를 어떻게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urjj@kdi.re.kr).

소화해 내느냐에 따라 실제 성장률 증대효과는 지금 사람들이 예측하는 바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고용조정 압력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극복될 수도 있다. 취약한 서비스업 경쟁력을 미국의 서비스업 경쟁력과 보완하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재의 대세계수출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한 지원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제도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농민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 및 보상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는 경제의 조정과정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프로그램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무역조정제도의 변경을 통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차제에 무역조정지원 재원을 이용하여 사업소득이나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해 온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된 매출이나 소득변화를 통해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 이는 비록 FTA로 인한 피해와 다른 이유를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자영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KL**